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 단독 · 소규모 공동주택 -

2022. 1. 1.



환경사업단
수도시설과

목 차

1장 총 칙	
1. 목 적	3
2. 적용범위	3
3. 용어의 정의	3, 4
2장 공사비 지원업무 시행절차	
1. 공사비 지원 신청 등	5
2. 현장조사	5
3. 공사비 지원 대상여부 결정 등	6
4. 우선순위 결정	6
5. 공사비 지원 승인 및 통보	6
6. 견적 협의 및 시공, 공사비 지원 신청	7
7. 공사완료 확인 및 사업비 정산·지원	7
8. 개량대상지 수질검사 및 만족도 조사 실시	8
3장 공사비 지원 심의 위원회	
1. 구 성	8
2. 회 의	8, 9
4장 지원 대상 및 규모 등	
1. 지원 대상	10
2. 공사비 지원규모	11
3. 공사비의 정산	11
5장 공사의 품질관리	
1. 감 독	12
2. 품질관리	12
6장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한 제재	
1. 제 제	12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1 장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수도법 제21조 제5항 및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에 의해 시행하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이하 “옥내급수관”) 개량 시 공사비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절한 공사비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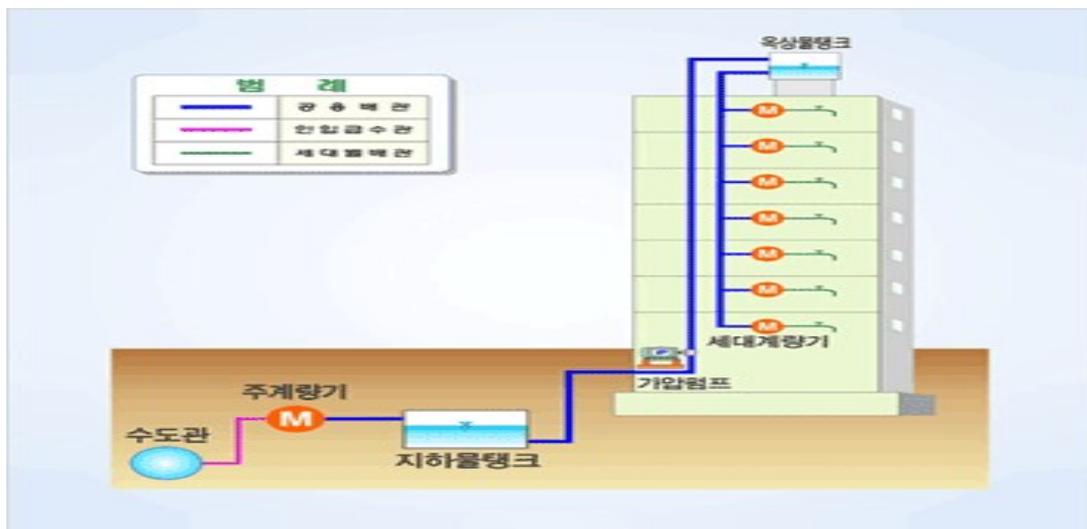
2. 적용범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의 업무 처리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등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용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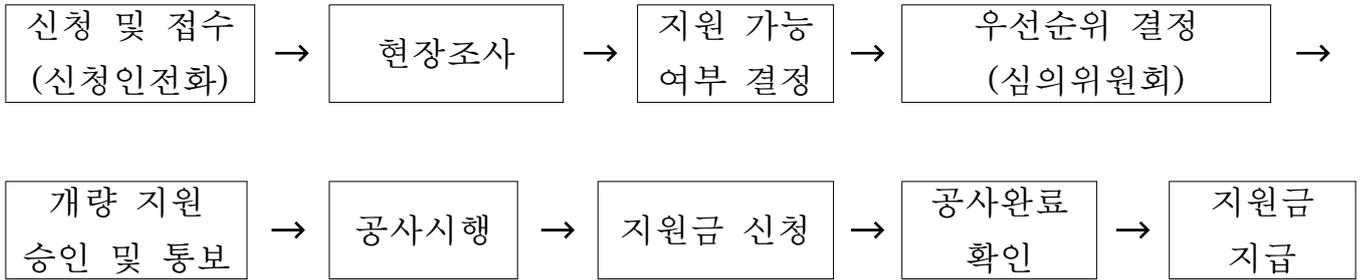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조례” 라 함은 부천시 수도급수조례를 말한다.
- 나. “규칙” 이라 함은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말한다.
- 다. “옥내급수관” 이라 함은 조례 제11조 제5항에 정의된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을 말한다.



- 라. “노후주택” 이라 함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을 말한다.
- 마. “갱생” 이라 함은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 바. “교체” 라 함은 기존 수도관을 새로운 내식성 수도관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 사. “기초생활수급자” 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를 말한다.
- 아. “차상위계층” 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 자. “주거용주택” 이라 함은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을 말한다.
1. 단독주택 : 단독주택 및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
 2. 다중주택 :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고 연면적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3. 다가구 주택 : 주택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합계가 660㎡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
- 차.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제외)】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2 장 공사비 지원업무 시행절차



1. 공사비 지원 신청 등

공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담당과에 전화, 또는 서면 등을 통하여 옥내 수도배관 진단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은 관리자 또는 대표자가 주택소유자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 별지4호의 서식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 하여야 한다. (단,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자부담비가 확보된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사록(참석자 서명날인)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현장조사

가. 신청을 받은 옥내급수관 지원 담당자(이하 “담당자”)는 현장에 출장하여 녹물출수 및 아연도 강관 사용 여부를 진단한다.

나. 가. 이외에 육안으로 검사가 어려울 경우 수질검사는 현장에서 가능한 2개 항목(탁도, 잔류염소)만 실시하고 수용가 요구 등 필요시 먹는물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한다.

다. 현장조사 시 공사비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사항을 포함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개량 지원 절차
2. 지원 금액 및 부담비율
3. 지원금 신청서 등 안내
4. 신청인 준수사항 등

3. 지원 대상여부 결정 등

- 가. 담당자는 진단을 완료한 후 지원대상일 경우 옥내급수관 컨설팅(출장)보고서를 작성·결재를 득해야 한다.
- 나. 지원 대상은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이하인 세대이며, 자세한 지원대상은 4장의 1호를 참고한다.
- 다. 공사비 지원을 받을 자가 신청한 건물이 공사비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담당자는 지원불가 사유를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4. 우선순위 결정

- 가.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1)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 건물
 - 2) 2순위 : 소형 면적 주택 순
 - 3) 3순위 : 접수순
 - 4) 공동주택 중 신청자가 많아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 노후도가 심한 소형 공동주택 중 건축연도가 앞선 소형주택 우선 지원
- 나.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1) 신청자가 많아 전부를 지원할 수 없을 때
 - 2) 기타 순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5. 공사비 지원 승인 및 통보

- 가.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담당자는 해당 세대의 표준공사비 및 지원을 등의 지원범위를 산출하여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 나. 이 경우 전액지원공사(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제외)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하며, 총 지원금액 오천만원 미만은 담당과장, 오천만원 이상은 국장(단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 다. 결재를 득한 후 담당자는 공사비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범위 등을 신청인에게 전화, 문자 또는 서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6. 견적 협의 및 시공 , 공사비 지원 신청

- 가. 공사비 지원 대상자는 개량업체와 협의하여 적합한 개량 방식을 정하고, 이에 따른 견적을 이미 통보받은 표준공사비에 부합하도록 산출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 나. 공사의 계약은 건설 산업 기본법에 따라 공사에정금액이 일천오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전문건설업 등록업체(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와 계약을 하여야 하며, 갱생공사의 경우는 품질확보를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옥내급수관 갱생 우수업체로 등록된 자를 선정 계약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 계약 시 설계내역서 및 도면, 청렴 이행 서약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 다. 담당자는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산출되었거나, 적정치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공사비 조정을 중재할 수 있다.
- 라. 개량업체는 시공을 함에 있어 수도법 제14조의 법규를 준수하여 수도용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및 「옥내급수관 갱생공사 시방서」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견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 중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마. 신청인(개량업체 대행 가능)은 공사가 완료되면 담당과에 공사완료 확인 및 공사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공사비 지원 신청서와 함께 준공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일체(견적서, 사진대지 등), 공사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하나를 구비하여야 한다.

- 1)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상의 일반과세자)
- 2) 간이영수증(사업자등록상의 간이과세자)
- 3)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7. 공사완료 확인 및 사업비 정산·지원

- 가. 공사완료 확인 신청이 접수되면 7일 이내에 현장에 출장하여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공사비 지원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공사완료보고서” 를 작성·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 나. 공사완료 확인 담당은 다음과 같다.
 - 1) 전액지원 공사는 담당팀장이 검사하여야 한다.

다. 담당자는 공사완료 확인 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신청자 또는 개량업체에 즉시 하자보수를 명할 수 있고, 하자보수 완료 후 공사완료 확인을 재요청하여야 한다.

라. 담당자는 공사완료 확인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개량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8. 개량대상지 수질검사 및 만족도 조사 실시

가. 수질검사는 40세대 이상 공용배관 교체 공동주택에서 수질검사 요청 시 준공 후, 30일 이후에 실시 할 수 있으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나. 수질검사 비용은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금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3 장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심의 위원회

1. 구성

“심의 위원회” (이하 위원회)는 담당과의 과장을 심의 위원장으로 정하고, 각 팀의 팀장을 심의 위원으로 정하여 구성한다.

2. 회의

가. 위원회의 회의는 월1회 소집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횟수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옥내배관 담당이 된다.

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1) 지침 제2장 4호 나항의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 결정(지원, 유보, 연내 불가 등)
- 2) 공사비 지원 대상 중 수도급수조례 제40조 제3항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결정
- 3) 1994. 4. 1 이후 건축허가 된 아연도강관 사용 건축물에 대한 승인 결정

- 4) 전액지원 공사(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제외) 및 총 지원금액 오천만원 이상 공사 승인결정
 - 5) 기타 관련규정 및 지침이 불명확하여 결정이 필요한 경우
- 마. 위원회의 심의를 개최 시에는 옥내급수관 컨설팅(출장)보고서를 첨부한 심의 안건을 작성하여 요청하고, 심의 후에는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바.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1) 개최, 폐회, 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성명
 - 3) 심의사항
 - 4) 심의결과
 -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장 지원 대상 및 규모 등

1. 지원 대상

가.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이하인 세대

- 1) 공동주택 : 주거전용면적 130㎡이하로써,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 등의 면적은 제외한다.
- 2)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 130㎡이하의 주택으로써,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2가구 이상 거주 시 다가구 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 3) 다가구주택 :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으로써, 환산연면적이 130㎡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 4)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하여 지원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1) ~ 3)호 중 적합한 기준을 따른다.
- 5) 공용배관 : 주거전용면적(또는 환산연면적) 130㎡이하인 공동주택의 건물내 배관 개량에 지원하며, 동일한 단지 내 13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130㎡이하 세대로서 지원한다.
-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나.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 건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중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설치·운영하는 시설
- 2)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임대 제외)
- 3) 단체·개인이 무료로 운영하는 시설(임대 제외)에 지원한다.

다. 학교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은 공사비 지원을 할 수 없다.

2. 공사비 지원규모

가. 개량비용의 지원금은 면적에 따른 표준공사비와 개량업체와 계약한 원가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총공사비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주택 면적별로 차등 지원한다.

-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사회복지시설 등 : 전액 지원
- 2) 60㎡ 이하 : 총 공사비의 90%
- 3) 85㎡ 이하 : 총 공사비의 80%
- 4) 130㎡ 이하 : 총 공사비의 30%

나.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개량비용 지원 최대금액은 세대 당 공용배관 60만원, 옥내급수관 180만원으로 하고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각각 지원한다.

다. 담당과장은 공사비 전액 지원 대상 및 일천오백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방법, 지원 금액, 품질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여야 한다.

3. 공사비의 정산

가. 담당자는 공급가액이 표준공사비를 초과하는 경우 등 사업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비의 조정을 중재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표준공사비를 초과한 경우 개량업체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담당자는 정산 시 이를 고려하여 공사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라도 지원 최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그 외 공사비를 정산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1) 전액지원공사(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소유주택 제외) 및 공사 금액 일천오백만원 이상의 공사
- 2)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미 시공 등 당초 계약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5 장 공사의 품질관리

1. 감 독

- 가. 공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은 수용가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전액지원공사(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제외)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감독하고 현장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2. 품질관리

- 가.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 중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감독, 검사,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 나. 검사결과 시공불량으로 재시공이 요구될 시 소유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사실을 확인한 후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다. 사용자재는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인증 등)에 따라 위생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라. 일천오백만원 이상의 공사를 추진하는 개량업체는 신청인에게 하자보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이를 2년 동안 보관 하여야 한다.

6 장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한 제재

1. 제재

- 가.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청구 하여야 한다.
 - 1) 관련법규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고자 한 자는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지 제1호】

옥내급수관 개량 면적별 표준공사비

주택유형	규 모	표준 총공사비	비 고
옥내 급수관	면적(또는 환산면적) 130㎡ 이하	1,300천원 + [(면적 - 50㎡) × 11천원]	최대 180만원 (세대당)
	기준 최소면적 (50㎡) 이하	기본 총공사비(1,300천원)	
공용배관	면적(또는 환산면적) 130㎡ 이하	옥내급수관 표준 총공사비 - 700천원	최대 60만원 (세대당)

※ 면적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

1. 개량비용 지원금액은 공사완료 후 개량업체에서 제출한 원가계산서 상의 총공사비와 면적별 표준 총공사비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 중 면적별 지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2. 공동주택의 건물 내 공용배관과 단지 내 주도로에 설치된 배관을 함께 개량하는 경우 세대당 최대 6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의 경우 전용면적 130㎡를 초과하는 단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130㎡를 초과하는 단지는 면적을 130㎡로 하여 총공사비를 산출한다.

【별지 제2호】

옥내급수관 컨설팅(출장)보고서

상담일시 : 20 년 월 일 요일

일반현황

문서접수번호				위 치	
신청자 성명				연 락 처	
계량기 구경				건물유형	
연면적 (㎡)		준공 년도		건물현황	지하 층/지상 층

1. 일 시 :
2. 장 소 :
3. 목 적 :
 - 옥내배관 재질 :
 - 녹물출수 여부 :
 - 현장사진

--	--	--

4. 지원 적정여부

- 관 상태 설명 및 개선방법 안내 :
 - 예시 : 내부배관은 아연도 강관으로 현재 부식이 진행 중임으로 노후배관을 교체하도록 민원인에게 설명 및 안내
- 수용가의 반응 : (예시 : 수용가에서는 녹물이 출수되어 아연도 강관을 교체)

상기와 같이 출장하였기에 복명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자 성명

【별지 제3호서식】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신청서

소유주	성명 : _____ 생년월일 : _____ . _____ . _____		
	연락처 : _____		
개량 장소	주소 : _____	면적 : _____ m ²	
개량 업체	업체명 : _____ 주소 : _____		
	대표자 : _____ 연락처 : _____		
준공 금액	_____ 원 (부가가치세 포함)	지원 급수관 종류	개인배관 / 공용배관
위임의 경우	공사비 지원금 수령을 지원금 청구서 예금주에게 위임 함	소유주와의 관계	
<p>1. 위와 같이 공사비 지원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p> <p>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2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_____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연락처 :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부천시장 귀하</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p> <p>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지원</p> <p>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연락처</p> <p>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p> <p>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예, <input type="checkbox"/>아니오</p>			
첨부서류	<p>1. 공사금액 산출서 : 견적서 또는 설계내역서(일천오백만원이상)</p> <p>2.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p> <p>3. 무통장 입금내역서 또는 거래확인서</p> <p>4. 전·중·후 사진대장</p> <p>5. 별지 제5호의 지원금 청구서, 소유주 또는 대표인 통장 사본</p> <p>6. 대표인 위임 시 : 별지 제4호의 동의서</p>		

【별지 제4호서식】

노후 공동주택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시행 동의서

공동주택명 :
대표회의(입주자) 대표 : 성명)

주 소 :
호수) 생년월일)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부천시에 상기사업의 시행을 신청하고자 하오며 위에 명시한 입주자를 주민대표로 하여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데 동의합니다.

※ 주의 : 본 동의서의 참석자와 서명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연번	동호수	소유자(입주자) 성명	소유자 실거주 여부 (O,X)	동의여부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지 제5호서식】

지 원 금 청 구 서

금액 : 금 원(금 원)

상기 금액을 2022년도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의 지원금으로 정히 청구하오니 아래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좌번호 :
2. 은행명 :
3. 예금주명 :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부 천 시 장 귀 하

심 의 번 호	제 호
심의년월일	년 월 일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심의

제출년월일	년 월 일
-------	-------

심의대상

- 위치 :
- 성명 :
- 건축규모 : 면적 : 총수 : 세대수

심의안건

-
-

조사내용

-
-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옥내급수관 컨설팅 보고

주민 만족도조사 설문조사표

2022 년 ____ 월 ____ 일

본 설문조사는 도비 및 시비를 지원받아 옥내급수설비를 개량한 세대의 개량 후 수도물 수질 및 수압(수량)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보다 나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공사 시 불편사항이나 주민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보다 나은 수도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소 : 부천시 _____

1. 종류 : 옥내급수관 / 공용배관

2.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 동기

가. 옥내급수설비 개량에 도비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① 알고 있었다.
- ② 모르고 있었다.
- ③ 시·군비만 지원되는 줄 알고 있었다.

나.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을 어떻게 알고 신청하셨습니까?

- ① 뉴스 ② G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홍보영상 ③ 홍보 포스터(리플렛)
- ④ 도시 인터넷 홈페이지 ⑤ 네이버 등 인터넷 홍보물
- ⑥ 동네 주민 ⑦ 기타 _____

3. 옥내급수설비 개량 시공 관련

가. 개량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 ① 시에서 제공한 업체 중에서 선정
- ② 평소 알고 있던 업체로 선정
- ③ 이미 개량을 실시한 주민이 권유하는 업체로 선정

나. 시공 전·후 불편사항이나 하자에 대한 조치결과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다. “나” 항목과 관련하여 불만족하신 경우, 사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개량업체 불친절
- ② 불편사항이나 하자에 대한 늦은 처리
- ③ 기타 _____

4.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

가. 도비 및 시비를 지원하여 녹슨 상수도관을 개량하는 본 사업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나. “가” 항목과 관련하여 불만족하시는 경우, 사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개량 결과 수질·수압 개선효과 미미
- ② 지원 금액이 너무 적음 ③ 처리 절차가 복잡함
- ④ 기타 _____

5. 수돗물을 어떤 방식으로 음용하고 계십니까?

가. 개량 전

- ① 직접 음용 ② 정수기를 통해 음용
- ③ 먹는샘물(생수) 구입 음용(수돗물은 음용하지 않음)

나. 개량 후

- ① 직접 음용 ② 정수기를 통해 음용
- ③ 먹는샘물(생수) 구입 음용(수돗물은 음용하지 않음)

다. 개량 후에도 직접 음용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물탱크나 수도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 ② 상수원이 깨끗하지 않을 것 같아서
- ③ 수돗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 ④ 기타(사유 : _____)

6. 본 사업과 관련하여 건의 사항이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합 니 다